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신홍식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9. 30.

행정위원회
전문위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95호로 2024년 9월 13일 신홍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「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관리·운영의 위탁, 관계기관과의 협력,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,
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,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9.19.~2024.9.24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
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총 11개의
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
률」(이하 “금융중심지법”이라 한다)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고
있는 용어의 뜻을 적용하여 정의함.
 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구청장이 금융산업에 관한 다
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 금융중심지법
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
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
및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
하고있고,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
을 금융중심지로 지정¹⁾하였음.

1)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-1호

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(시행. 2015.7.30.)를 제정하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.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이 서울특별시의 유일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기에 구청장 차원에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책무는 유의미한 조문이라고 사료됨.

- 안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부터 제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에서는 금융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, 관련 사업, 금융 전문인력 양성,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안 제10조(행정지원 등)에서는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신규 창업하거나, 외국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이전하는 경우 인·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○ 검토 결과

- 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금융중심지법」(시행. 2008.3.22.)을 제정함.
-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'09.1월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서 인프라 구축²⁾에 만전을 기한 바 있음.

2) 서울특별시 여의도 금융중심지 주요내용

주요내용	세부내용
서울핀테크랩	- 우수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주해있는 국내 최대의 핀테크 전문공간

※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 혜택

구분	지원 종류	세부 내용	
		본부 및 지역본부 설립	지점 설립
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여의도 국제금융 센터 입주기업 ¹⁾	임대료 지원	최장 5년간 임대료의 최대 70% 지원 (국제금융오피스 입주기관)	
	채용 지원	기업의 인력규모 및 역내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내국인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월50만원 지원 (최대 6개월, 기관 1개당 최대 2억원)	
	직원 교육 및 훈련 지원	내국인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월50만원 지원 (최대 6개월, 기관 1개당 최대 6,000만원)	
	사업시설 설치 지원	사업시설 설치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의 최대 25% 지원 (기관 1개당 최대 25억원)	사업시설 설치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의 최대 10% 지원 (기관 1개당 최대 10억원)

주요내용	세부내용
	- 서울 핀테크랩은 유망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무실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모데이, 해외 IR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
금융전문대학원	- 서울시와 금융위원회, KAIST가 공동 설립한 국내 최초의 금융전문대학원 - AI 데이터 사이언스,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금융 MBA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주역을 육성하고자 함
미래혁신성장펀드, R&D 지원	- 서울시는 '미래혁신펀드'를 조성하여 '22년까지 1억 7500만 달러 지원 - '22년까지 30개 프로젝트에 60억원의 R&D 지원
서울국제금융오피스	- 서울시는 여의도에 국제금융오피스를 수립하여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-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

- 정부 및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이 2019년 우리 구(區)에서도 국제금융타운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³⁾을 기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체 조례 제정 없이 금융교육 및 홍보영상 송출 등의 사업에만 치중된 실정임. 더욱이 2023년 7월 국제금융타운(미래비전추진단/비전협력과 → 기획재정국/지역경제과)이 속해있던 미래비전추진단이 다른 과로 통폐합되면서 금융특구에 관한 사항이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다고 하겠음.

- 한편,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‘국제금융센터지수’(GFCI⁴⁾) 평가('24.3. 발표)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 도시 중 서울시가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평가 결과(11위)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임.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'23년 ‘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’(2023~2025)을 확정하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 과제⁵⁾를 수립함.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구(區)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의도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
3) 영등포구 자체 금융특구 주요사업('23년 기준) ※2023년 예산: 29,000천원 2024년 예산: 17,000천원

- 구민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
-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위한 금융진흥협의회 구성 운영
-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 홍보영상 송출
-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심의·승인

4) 영국 지엔(Z.YEN)과 중국 종합개발연구원(CDI)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세계의 도시에 대한 금융 경쟁력을 수치화한 지수이며 평가 분야는 기업환경, 금융부문 발전, 인프라, 인적자본, 평판 및 일반 요소 총 5개 영역임.

5)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4대 추진 과제

<p>1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-비금융 융합 촉진 ▪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▪ 핀테크 지원 강화 	<p>2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▪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▪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▪ 외환제도 개선
<p>3 자본시장의 글로벌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▪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▪ 자본시장 경쟁·효율성 제고 ▪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	<p>4 금융중심지 내실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사 해외진출·투자 지원 강화 ▪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▪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

참 고 자 료

1 금융중심지의 조성관 발전에 관한 법률

- 제12조의2(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)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